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공장설립제한지역 추가〉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681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공장설립제한지역 추가	2
※ 참고자료	9
1.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개요	9
2. 한강수계 공장설립제한지역 현황	10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18일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등 상수원 주변지역을 규제하고 있음.

상수원보호구역은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우 현행법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근거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오랜 시간 감수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범위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2조).

Ⅲ. 검토의견

1.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공장설립제한지역 추가

개정안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수도법」 제7조의2¹⁾에 따라 공장²⁾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 함)을 추가하고(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이러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	

- 1)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후단 생략)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별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이하 생략)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u>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1. ~ 3. (현행과 같음) 4. <u>한강수계 안에서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 ----- -----<u>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u>----- ----- ----- ----- ---
--	---

현행법 제2조제5호는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상수원 관리지역 구분]

규제지역	근거법
상수원관리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제7조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이러한 지역에서는 그 지정 취지에 맞게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및 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등³⁾ 주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한되는데, 현행법 제11조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이러한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의 수질보전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1조)]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敎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이하 생략)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 ④ (생략)

참고로, 2024년 기준 한강수계기금에서 편성된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805억 6,000만원으로, 상수원관리지역 2,168km²의 주민 18,431명을 대상으로 함(참고자료 참조).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구분	사업비(백만원)		사업대상	
	일반지원비	특별지원비	면적(km ²)	인구(명)
	64,114	16,441		
계	80,560		2,168.090	18,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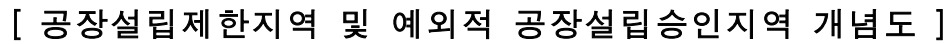
자료 : 환경부

한편, 현행법 제12조⁵⁾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상수원관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가동으로 인한 수질오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 대상에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공장설립제한지역 또한 상수원의 수질보전이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규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겪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나 생활 환경상의 불편을 보완하고, 수질오염 발생을 막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려는 의의가 있음.

참고로,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의 개념도는 다음과 같음.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료: 환경부

다만, 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수계기금”이라 함)에서 지원되는 금액⁶⁾과 지방비로 구성되므로, 안 제11조에 따라 사업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수계기금의 운용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수반되어야 함.

6) 일반지원사업비는 총액의 80%, 특별지원사업비는 총액의 최대 20%를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위원회의 구성원 중 서울시, 경기도 및 강원도의 경우 공장설립제한지역에 대한 지원은 수계기금의 주요 재원인 물이용부담금⁷⁾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상수원관리지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개발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외의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임.

둘째, 사업의 재원인 수계기금 등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기존 지역에 대한 사업비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마지막으로, 상수원관리지역에서는 공장 이외에 공동주택, 식품접객업 등 오수배출시설도 제한하고 있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은 공장만 제한하고 있어, 두 지역 간 제한 범위가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대한 보상에 수계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 제11조에 따라 한강수계 안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주민지원 사업 대상 지역으로 포함하게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① 전체 공장설립제한지역에 대한 지원 시 향후 5년간 총 5,717억원(연평균 1,143억 4,000만원), ② 순수 공장설립제한지역에 대한 지원 시 향후 5년간 총 1,147억 5,000만원(연평

7)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의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비용은 톤당 170원임. 한강수계의 경우 팔당호 및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취수된 원수·정수를 공급받는 지역(서울시(25개 구), 인천시(8구 2군), 경기도(25개 시))에 부과됨.

균 220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주민지원사업 (안 제11조)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 1 (전체 공장설립제한지역)	1,143.4	1,143.4	1,143.4	1,143.4	1,143.4	5,717	1,143.4
시나리오 2 (순수 공장설립제한지역)	229.5	229.5	229.5	229.5	229.5	1147.5	229.5

주: 대상 면적은 전체 공장설립제한지역(예외적 공장설립승인지역 면적 포함)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1.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근거) 한강수계법 제11조
- (지원대상) 상수원관리지역 및 해당 지역의 주민

계('24년기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면적(km ²)	인구(명)	면적(km ²)	인구(명)	면적(km ²)	인구(명)	면적(km ²)	인구(명)
2,168.090	18,431	160.761	1,808	184.978	3,477	1,822.351	13,146

- (사업비) 매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규제지역 면적과 지원대상자 증감 등을 고려 예산 편성

(단위 : 백만원)

연도	'21년	'22년	'23년	'23년	'24년
합 계	73,538	77,215	82,942	84,043	80,560
일반지원비	57,657	58,830	61,772	65,781	64,114
특별지원비	14,708	15,443	17,161	17,491	16,441

□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24년 사업비 (백만원)
일 반 지 원	직접지원 (개인)	전용카드(농협체크카드)를 통해 재산규모를 고려하여 가구당 최대 1,000만원/년 이내 지원 (유형업종 등 3개 분류 7개 업종 사용제한) - 대상자* : 5,285명, 1인당 평균 227만원/년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자 등	12,015
	간 접 지 원*	소득증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소득향상이 가능한 사업 (마을 농기계 구입·수리, 비료구입, 공동창고 설치 등)	11,648
		복지증진 지역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 (마을회관 유지보수, 공동시설 운영비, 마을태양광 설치 등)	36,754
		육영 장학재단 또는 장학회를 설립한 장학사업, 교육기자재 구입,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등	2,132
		오염물질 정화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 하천정화활동 등)	3,565
특별지원		수질개선, 복지증진, 지역발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비의 30%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객관적 평가를 통해 결정)	14,446

* 특별지원사업 상류지역보전비 포함(강원·충북 20억)

2. 한강수계 공장설립제한지역 현황

(단위: km²)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km ²)			
		공장설립제한 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2호)	합계
서울특별시	강동구	9.76	2.64	8.91	21.31
	광진구	5.01	0.00	0.20	5.21
	송파구	7.87	2.26	3.43	13.56
강원도	강릉시	46.43	198.82	37.87	283.12
	고성군	29.25	76.82	27.31	133.38
	동해시	23.92	37.66	16.55	78.13
	삼척시	53.84	102.49	43.79	200.12
	속초시	18.30	19.37	23.63	61.30
	양구군	54.93	64.09	25.71	144.73
	양양군	41.53	68.58	29.57	139.68
	영월군	35.32	87.13	23.08	145.53
	원주시	14.08	39.79	8.84	62.71
	인제군	45.38	145.43	27.66	218.47
	정선군	69.49	175.14	27.75	272.38
	철원군	32.61	104.06	20.71	157.38
	춘천시	26.35	86.58	10.11	123.04
	태백시	57.74	27.65	53.71	139.10
	평창군	61.68	114.28	63.89	239.85
	홍천군	88.65	334.39	68.22	491.26
	화천군	57.25	90.10	46.36	193.71
	횡성군	3.17	104.40	2.38	109.95
경기도	가평군	14.47	37.86	3.44	55.77
	광주시	2.91	243.39	0.09	246.39
	구리시	8.48	22.38	2.32	33.18
	남양주시	38.68	152.20	8.93	199.81
	수원시	0.28	0.00	0.00	0.28
	안성시	14.29	59.35	2.09	75.72
	양주시	0.26	0.00	1.65	1.91
	양평군	27.81	288.19	20.25	336.25
	여주시	9.72	30.47	3.79	43.98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km ²)			
		공장설립제한 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2호)	합계
	연천군	23.40	75.25	11.75	110.40
	용인시	0.00	25.15	0.00	25.15
	파주시	7.02	15.67	12.40	35.09
	평택시	0.43	1.08	0.00	1.51
	포천시	9.67	11.07	0.13	20.87
	하남시	27.11	43.95	9.89	80.95
충청북도	괴산군	9.16	26.40	0.00	35.56
	단양군	15.33	42.24	0.89	58.46
	보은군	29.32	134.59	9.60	173.51
	영동군	31.68	69.41	12.93	114.02
	옥천군	41.32	84.88	19.86	146.06
	제천시	0.22	71.05	0.00	71.27
	진천군	3.41	0.00	0.00	3.41
	청주시	8.64	0.00	0.00	8.64
	충주시	24.78	141.93	19.80	186.51

*2024년 12월 기준

자료: 환경부